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단50155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미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시현

피 고 1.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레

담당변호사 최지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왕슬기, 이강혁

2. D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9지분에 관하여 2021. 6.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13,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5. 체결한 매매 계약 중 3/9지분에 관하여 이를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21. 06. 15. 접수 제116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9지분에 관하여 2021. 6. 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9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21. 6. 10. 접수 제113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 D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9지분에 관하여 2021. 6.경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13,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07171호 대여금 등 소를 제기하여 2020. 3. 25.경 105,36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의 법률상 배우자인 망 F은 2018. 7. 6. 사망하였는데 그 후인 2021. 6. 10.경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3/9지분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D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 해주었다.

다. 피고 B은 2021. 5. 25. 망 F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이 사건 부동산중 석곡리 551(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매매대금 21,000,000원, G(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을 매매대금 19,000,000원에 각 피고 D로부터 매수한 뒤, 2021. 6. 10.경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이하 위 매수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가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E는 2021. 6.경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수하고,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피고 D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경료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과 E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피고 B이 선의의 전득자라면, 피고 D과 E 사이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 중 E의 상속지분인 3/9 상당액인 13,333,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언급한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은 원고의 채무자 E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지위를 갖는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가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는 2021. 6.경 H, I과 함께 망 J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상속지분을 피고 D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갑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E는 본인 채무가 체납세금을 포함하여 총 274,182,707원에 달하여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E가 비닐하우스를 소유하며 매월 일정한 월세수입이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거나, 그 주장 금액규모에 비추어 위 채무초과 사실을 뒤집기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E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 D의 소유로 귀속시켰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와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전득자인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K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지 300평 이상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인근의 L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매매계약 체결일에 처음 만난 피고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망 J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채무 관계나 상속분할협약이 이루어지는지 등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따라서 E의 이 사건 상속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가1 내지 가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통상적 경로로 매수하였고, 대금지급 과정이나, 매매대금의 규모, 중개 수수료 지급 등에 있어서 수상한 점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 B과 피고 D, E는 위 매매계약 전에 전혀 일면식이 없었던 점, 피고 B은 K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농지를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피고 D이 사해행위 목적물을 선의의 전득자인 피고 B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피고 D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게 되어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액으로서,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피고 D이 취득한 이익인 13,333,333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40,000,000원의 1/3지분 상당액)보다 큼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D이 피고 B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모두 수령한 날 다음날인 2021. 6. 16.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판결 확정시에 가액배상 의무가 발생하므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그 이율도 장래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여 민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를 일부 기각한다).

4. 결론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피고 B이 악의의 전득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로서 위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기

별지